

[거창군 폐기물관리예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○ 제출일 : 2004. 1. 7.

○ 제출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4. 1. 9.

다. 상정일자 : 2004. 1. 15.

(제10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)

라. 의안번호 : 제 2004 - 5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○ 폐기물 재활용사업의 추진에 따른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,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사업과 관련한 조례 신설로 음식물쓰레기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,

○ 그 동안 쓰레기 종량제시행으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군민의 청결유지 책무 (안 제4조)

- 청결유지 책무, 청결유지 조치사항, 청결유지 이행 명시

○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조치근거 마련 (안 제6조)

- 근거 :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
- 대상 : 50가구 이하마을 및 산간, 오지, 도서지역 등
-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명시 (안 제7조)
 - 배출시간 :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
-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변경 (안 제26조의2)
 -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금액의 50%까지 지급
 - 1인당 포상금은 1회 20만원,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
 -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함.
- 음식물쓰레기 관련 규정 삭제
-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2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제5조(적용범위) 제2항 ----- 12P
 -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군수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제외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관리구역에 대한 설명 필요함.
 - 27P 별표4 개정안의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산정 방법과 29P 별표5의 대형폐기물, 건설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징수 기준의 개정안 신설품목의 처리비 단가산정 근거의 설명이 필요함.

-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제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○ 본 조례안은 폐기물 재활용 사업의 추진에 따른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관련규정을 삭제하고,

-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,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- 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생략